

해양수산부 예규 제48호

「공사용 항로표지 관리운영 지침」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2015년 04월 14일
해양수산부장관

「공사용 항로표지 관리운영 지침」 일부개정(안)

공사용 항로표지 관리운영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지방해양항만청”을 “지방해양수산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지방해양항만청 해양교통시설”을 “지방청 항로표지시설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지방해양항만청 해양교통시설”을 “지방청 항로표지시설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“지방해양항만청장”을 각각 “지방해양수산청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제3호 중 “지방해양항만청 해양교통시설”을 각각 “지방청 항로표지시설”로 한다.

제9조 중 “(대통령훈령 제248호)”를 “(대통령훈령 제334호)”로 하고, “훈령”을 “예규”로 하며, “2015년 4월 12일”을 “2018년 4월 14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공사시행 협의) ①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(이하 "소속기관"이라 한다)의 공사 시행부서가 공사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비관리청 항만공사 허가·협의 부서가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시행을 허가·협의 하고자 할 때에는 항로표지 설치·관리에 대하여 관할 <u>지방해양항만청(이하 "지방청"이라 한다)</u> 해양교통시설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소속기관 공사 시행부서 또는 비관리청 항만공사 허가·협의 부서는 제3조제1항에 따라 <u>지방항만청 해양교통시설 담당부서</u>와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비관리청항만공사 허가시 또는 협의회 조건으로 부과 하여야 한다.</p>	<p>제3조(공사시행 협의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지방해양수산청(이하 "지방청"이라 한다)</u> 항로표지시설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<u>지방청 항로표지시설</u> ----- ----- -----</p>
<p>제5조(관리·운영) ① 공사용 항로표지는 해당공사의 준공일까지 공사 시공자가 관리·운영 하여야 한다. 다만, 공사가 3개월 이상 장기간 중단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<u>지방항만청 해양교통시설 담당부서</u>는 공사 시행부서와 관리기간 등을 협의하여 운영 할 수 있다.</p>	<p>제5조(관리·운영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지방청 항로표지시설</u> ----- ----- -----</p>
<p>제6조(항로표지 보관·운영) ① - 생략 -</p> <p>1. - 생략 -</p> <p>2. 공사 관련 소속기관은 공사 준공 후 재사용 계획이 없는 등부표 및 부표(이하 "부표류"라 한다)의 표체 및 계류장치 중 사용이 가능한 것은 부표류의 관리·운영을 관장하는 <u>지방해양항만청장(이하 "부표관리청장"이라 한다)</u>과 협의하여 관리전환 할 수 있다. 이 경우 운반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.</p>	<p>제6조(항로표지 보관·운영) ① - 생략 -</p> <p>1. - 생략 -</p> <p>2. ----- ----- ----- ----- <u>지방해양수산청장(이하 "부표관리청장"이라 한다)</u> ----- -----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3. 공사 시행부서는 공사 준공 후 재사용 계획이 없는 장비(등명기, 축전지, 태양전지 등)중 사용이 가능한 물품은 관할 지방해양만청 해양교통시설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국유표지에 사용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이관하여야 한다.</p>	<p>3. ----- ----- ----- -----지방청 항로표지시설----- ----- -----</p>
<p>제9조(재검토 기한)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4월 12일까지로 한다.</p>	<p>제9조(재검토 기한)----- ----- ----- ----- -----예규----- ----- 2018년 4월 14일 ----- -----.</p>